2012년 關稅法槪論 9급 기출문제 및 해설 (인책형)

구분	출제파트	문항수
제1장	문6. 납세고지서 송달 및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문10. 법적용의 원칙 등	2
제2장	문1.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문3. 수출판매 문15. 특수관계	3
제3장	문2. 가산금 문19.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기한	2
제4장		0
제5장	문12.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문17. 행정소송의 대상 문20. 심사청구 전반(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)	3
제6장	문7. 승객예약자료 요청 전반	1
제7장	문4. 보수작업 문14. 장치기간경과물품 매각절차	2
제8장		0
제9장	문5. 신고지연가산세 문8. 환적물품 등 유치 문9. 지식재산권 보호 문11. 원산지증명서 문16.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	5
제10장		0
제11장	문18. 벌칙	1
제12장	문13. 조서작성	1
제13장		О

문1. 과세물건확정시기

정답: ③

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이다.

문2. 가산금

정답: ④

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문3. 수출 판매

정답: ③

수출 판매의 요건 즉, sale for export의 개념에 해당된다.

나머지의 경우에는 sale for export의 개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
즉,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서 수출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.

문4. 보수작업

정답 : ①

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.

문5. 수입 또는 반송신고지연 가산세

정답: ④

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문6.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신고서류의 보관기간

정답: ④

수입신고필증,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문7.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

정답: ③

검사업무 대상자 본인 이외의 동반탑승자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있다.

세관장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.

- 1. 국적, 성명, 생년월일,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
- 2. 주소 및 전화번호
- 3.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
- 4.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·발권일·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
- 5. 여행경로 및 여행사

- 6.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
- 7. 수하물 자료
- 8.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

문8.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

정답: ②

세관장은 원산지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.

문9. 지식재산권 보호

정답: ③

- ① <u>관세청장</u>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② <u>세관장</u>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표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상표권 등에 관한 신고, 담보제공, 통관의 보류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문10. 신의성실원칙

정답: ③

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이 5가지를 갖춰야 한다.

-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.
-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여야 하고,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.
-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.
-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. 즉, 과세관청이 당초의 언동을 번복하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수 있다.
- ⑤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.

문제의 사례를 상기 적용요건에 적용하면

A사는 C세관의 안내문(공적인 견해표시)을 수령 후 안내문에 기제돤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다.

- ⇒ 상기 적용요건의 ①부터 ③ 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다. 즉, 과세관청의 공적이 견해표시인 안내문을 받고 그 안내문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하였다.
- 그 후 1건의 잠정가격 신고에 대하여 확정가격의 신고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세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다. 이에 대해 A사는 C세관의 안내문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 C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.
- ▷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. 상기 ④의 요건을 갖추었으며
- ⇒ 상기 ⑤ 적용요건처럼 과세관청의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.

문11. 원산지증명서

정답: ②

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해당 물품의 <u>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</u>하여야 한다.

문12.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기준

정답: ①

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

문13. 조서작성

정답: ①

- □.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, 조사를 한 사람, 진술자, 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- ㄴ.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.
- ㄷ. 조서는 피의자나 증인을 심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.
 - ⇒ 세관공무원이 피의자·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ㄹ. 세관공무원은 조서의 기재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.

문14.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

정답:②

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<u>있다.</u>

문15. 특수관계의 범위

정답: ②

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

문16.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

정답: ①

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세액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,

문17. 행정소송의 제기대상

정답: ④

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관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또는 감사원법상 심사청 구를 제기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문18. 벌칙

정답: ④

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

문19.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기한

정답:②

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사례를 검토해 보면

수정신고한 날이 5월1일 금요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5월 2일 토요일에 해당된다.

하지만 관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한이 <u>공휴일(「근로자의</u>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<u>토요일을 포함</u>한다)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</u> 한다.

따라서, <u>5월 2일 토요일 및 5월 3일 일요일은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5월 4일 월요일에 납부하면</u>된다.

문20.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

정답: ④

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<u>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.</u> 다만,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있다.